

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김병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55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1.

발 의 자 : 김병기 · 박지원 · 문금주
김문수 · 김현정 · 박상혁
이수진 · 박용갑 · 이기현
이정문 · 전진숙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조문을 두어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할 사항,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및 그에 대한 불수리나 신고의 직권 말소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.

이와 같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는 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 및 유형을 기반으로 하는데,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가 다수의 가상자산업 유형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해상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고 산업 생태계의 다양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상 가상자산사업자 정의를 가상자산업 유형에 따라 세분화하여 추가하도록 개정하는 방

향에 맞추어 현행법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세분화된 가상자산사업자 유형에 맞게 신고 제도가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7조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병기위원이 대표발의한 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(의안번호 제12556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,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.

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제1호 본문 중 “경우”를 “경우(가상자산 2차사업자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)”로 한다.

이 경우 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바목 또는 사목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가상자산사업자(이하 이 조에서 “가상자산 2차사업자”라 한다)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조(신고) ①·② (생략)	제7조(신고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u><후단 신설></u>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이 경우 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바목 또는 사목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가상자산사업자(이하 이 조에서 “가상자산 2차사업자”라 한다)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④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직권으로 말	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소할 수 있다. 1.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<u>경우</u>. 다만,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2. ~ 4. (생략) ⑤ ~ ⑨ (생략)	-----. 1. ----- -----<u>경우(가상자산 2차 사업자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).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2. ~ 4. (현행과 같음) ⑤ ~ ⑨ (현행과 같음)
--	--